

제3013호
2023. 7.25.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 홍 보 담 당 관 주 제 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규 칙]

제77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59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70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제170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170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12

제170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15

제1706호 :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1

제1707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81

제170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9

제170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93

제171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98

제171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2

제171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17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109

제171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171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18

제171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121

제171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124

제171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171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172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133

제17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172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172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제172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148

제172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2

제1726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1727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권한)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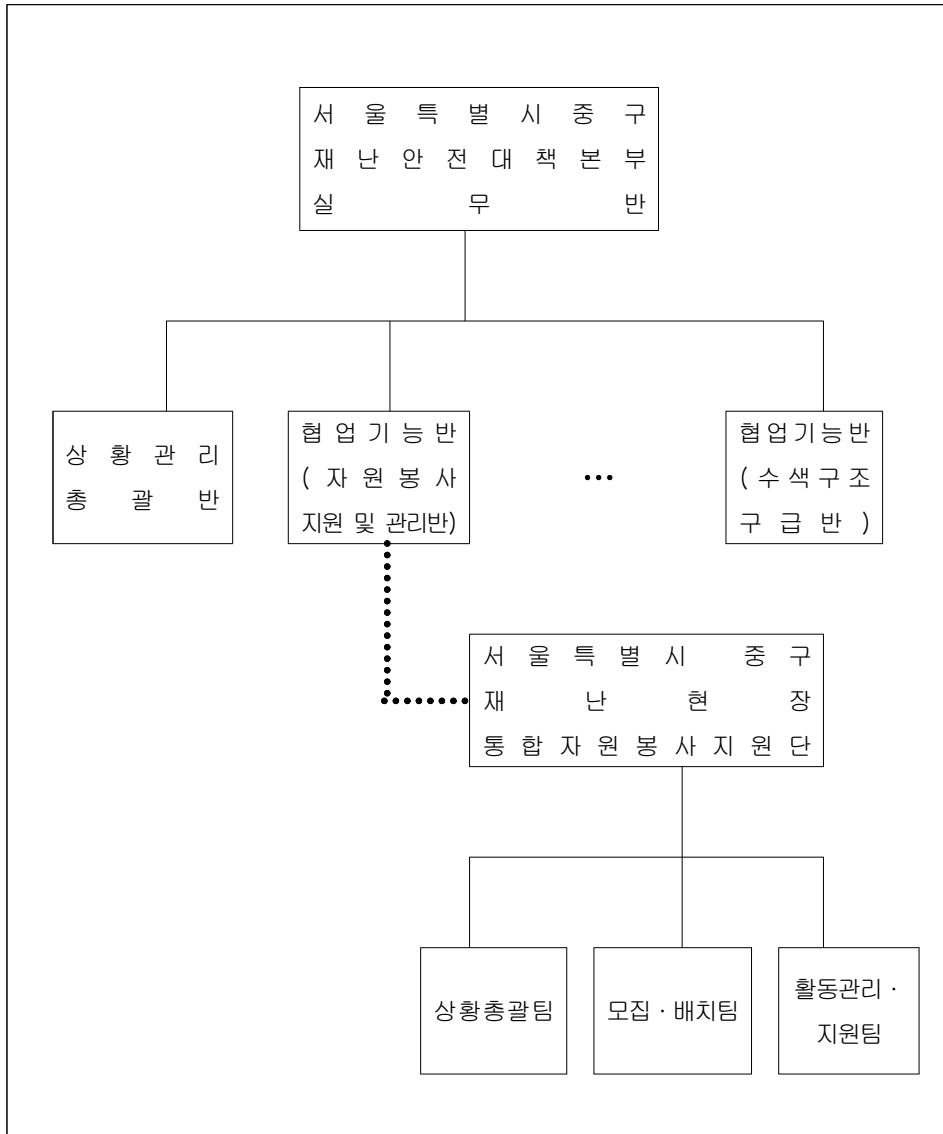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예시 >

팀명(예시)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지원 필요사항 파악 ▶ 재난 자원봉사활동 수요 조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 공유·보고 등)
모집·배치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봉사자 안내 및 상담 ▶ 재난 자원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안전교육 실시 (피해 상황 안내·활동 시 유의사항 등)
활동관리·지원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재난 위험요소 지속 관찰 ▶ 재난 물품·장비 소요 등 파악·지원 ▶ 재난 자원봉사활동 평가 (모니터링·활동 기록 등) ▶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지원

비 고

-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제1조,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
- 지원단의 구성 및 단장의 임무·권한 (제4조, 제5조)
- 실무팀의 편성 및 지원단의 설치 (제6조,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
- 재정지원 (제9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3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10조제3항의 2를 “영리행위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영리행위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한다.

제10조제3항의 3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를 신설한다.

제10조제3항의 4에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를 신설한다.

제10조제4항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0조제5항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중구에 소재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신설한다.

제10조제6항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0조의2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중구 관내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사용취소 및 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취소 및 정지를 가능하게 하고, 취소 및 정지를 위한 요건을 추가함
- 문화·체육시설의 우선 사용허가 대상을 규정함
- 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의 공개 규정을 추가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4호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매년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 내 공간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성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제6조)
- 안전점검, 관리대장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제10조)
-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추진 전담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중구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중구의 모든 부서와 동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경제발전,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

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5.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중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년 초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지능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지능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7.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8.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지능정보화부서 설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능정보화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효율화 추진
7.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추진
9.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 10.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례·규칙·제도의 개선
-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지능정보화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해 온·습도, 일정 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1. 장비설치에 따른 정보통신실
 - 2. 그 밖에 지능정보화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9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확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구청내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열람·정정
 -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 3.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 4.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시책 추진
- 제16조(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구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구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 3.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구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제18조(지능정보사회윤리)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제1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정보화교육

제20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 2. 지능정보화 전담공무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4. 구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5.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정보화교육 기반조성)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교육훈련기관, 지역내 대학 등 구민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내 대학, 교육기관, 학원, 전문업체 등에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구민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확산과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무상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 및 격려할 수 있다.

제23조(직원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공무원에 대해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무상의 지능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화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를 제한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별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 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전략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1. 6. 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신설(제4조)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항 삭제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 신설(제6조)
-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 구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제16조)
-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과 반복되는 규정 및 실효성이 적은 규정 등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여러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보실”을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9조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별표1 본문 중 시설명단의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센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관리국장

4. 기획재정국장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139조,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를 “제153조, 제159조 및 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동정부1팀장”을 “주민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6항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동정부과장, 여성보육과장, 복지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동정부과 동정부추진팀장”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동정부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정부추진팀장”을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시민친화국장, 생활복지친화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경제친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을 “각 국·소장”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동정부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검토하여「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를 “조사·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친화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제7조제1항 중 “동정부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제29조 및”을 “「도서관법」 제29조·제33조,”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 · 기금 · · ·”를 ““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원장은 시민친화국장”을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동정부과장”을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매도시교류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국·소장

제22조(「서울특별시 중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5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직무발명업무 총괄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직무발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제안업무 총괄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국·소장

제29조(「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미래중구포럼 운영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8조”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제33조(「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경제과장”을 “도심산업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친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를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로,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친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경제친화국장, 생활도시국장,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친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제친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8조 중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34조 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친화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생활복지친화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만 65세”를 각각 “65세”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만 80세”를 “80세”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으로하고”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민친화국장”을 “자원순환업무 총괄국장”으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행정업무 총괄국장

제52조제1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환경미화원 자녀들”을 “환경공무원 자녀들”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을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을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환경공무원 퇴직금”으로, “환경미화원 1명”을 “환경공무원 1명”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을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총괄부서의 장

제1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이되며”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생활도시친화국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국장 및 담당 부서장

제68조(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

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국장

제15조제2항 중 “생활도시친화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재무과장, 도심정비과장

제72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도시친화국장”을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국장”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를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도시친화국장”을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

과장, 재무과장, 도심재생과장, 가로환경과장”을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심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도로법」제92조”를 “조례는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92조”를 “제91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94조”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생활안전담당관”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생활안전담당관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철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생활도시친화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의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8조의 2를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전단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으로 하고, 후단의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8조의 3을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참여로지역주민의”를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추진을위하여”를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건강관리과장”을 “보건지소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임기는그”를 “임기는 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명한위원”을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건강과장”을 “지역보건과장”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의회”를 “중구의회”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구청”을 “중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다산 보건지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	다산·필·장충·을지로동
약수 보건지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92	약수·청구·동화동
황학 보건지소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52	황학·광희·신당·신당5동
중립 보건지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립·소공·명·회현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생 략)</p> <p>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되, 구 소속공무원은 <u>행정 지원국장</u>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행정관</u> <u>리국장</u>-----.</p>
<p>「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p> <p>제7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p> <p>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행정 지원국장</u>으로 한다.</p> <p>④ (생 략)</p> <p>⑤간사는 <u>홍보전산과장</u>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p> <p>제7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행정관</u> <u>리국장</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홍보담당관</u>-----.</p>
<p>「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홍보전산과장</u>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홍보담당관</u>-----.</p>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p> <p>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u>공보실에서</u>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p> <p>제6조(운영) ----- <u>홍보업무 담당부서</u>-----</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복지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시 설 명</th> <th style="width: 33%;">기 능</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중구 청소년수련관</td> <td>청소년수련활동등을 위한 시설</td> <td>중구 동호로5길 19 (신당동)</td> </tr> </tbody> </table>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등을 위한 시설	중구 동호로5길 19 (신당동)	<p>「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p> <p>제9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u>」-----</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복지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시 설 명</th> <th style="width: 33%;">기 능</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중구 <u>청소년센터</u></td> <td>청소년수련활동등을 위한 시설</td> <td>중구 동호로5길 19 (신당동)</td> </tr> </tbody> </table>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 <u>청소년센터</u>	청소년수련활동등을 위한 시설	중구 동호로5길 19 (신당동)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등을 위한 시설	중구 동호로5길 19 (신당동)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 <u>청소년센터</u>	청소년수련활동등을 위한 시설	중구 동호로5길 19 (신당동)											
<p>「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장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9조 (이사회) ① (생 략)</p> <p>②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p> <p>1. 2. (생 략)</p> <p>3. <u>시민친화국장</u></p> <p>4. <u>행정지원국장</u></p> <p>③ ~ ⑤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9조 (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행정관리국장</u></p> <p>4. <u>기획재정국장</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층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층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층무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 ⑥ (생략)</p> <p>⑦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⑧ (생략)</p>	<p>제1조(목적) ----- 제153조, 제159조 및 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p> <p>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p> <p>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략)</p> <p>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2. (생략)</p> <p>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에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p> <p>③ (생략)</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 ③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p> <p>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은 동정부1팀장이 보관한다.</p> <p>제11조(공고) ① (생략)</p>	<p>④ ----- 주민행정팀장-----.</p> <p>제11조(공고) (현행 제1항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당연직 위원 : 동정부과장, 여성보육과장, 복지지원과장</p> <p>2. (생략)</p> <p>④ (생략)</p> <p>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정부과 동정부추진팀장이 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15조(간사)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p> <p>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략)</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정부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정부추진팀장이 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p> <p>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장-----.</p>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구의회 의원, 학교장, 관할 동장 또는 <u>만 20세</u> 이상의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 ----- <u>20세</u> -----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u>시민친화국장, 생활복지친화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경제친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u> 으로 한다. ④·⑤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각 국·소장</u> ----- ----- -----.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u>동점부과장</u> 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자치행정과장</u> -----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① 구청장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u>조사·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u>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① ----- ----- ----- <u>조사·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u>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 ----- -----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등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시민친화국장</u>이 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생활도시친화국장, 행정지원국장</p> <p>2. 3. (생 략)</p> <p>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동정부과장</u>이 된다.</p> <p>② (생 략)</p>	<p>②----- ----- <u>행정관리국장</u> -----.</p> <p>③----- ----- -----.</p> <p>1. 도시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p> <p>2. 3.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 ----- <u>자치행정과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7조·제2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 ----- 「<u>도서관법</u>」 제29조·제33조, ----- ----- ----- ----- -----.</p>
<p>「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교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2조(준용) ----- ----- ----- 「<u>지방재정법</u>」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p>
<p>「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구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p> <p>2. 3. (생 략)</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p> <p>③위원장은 <u>시민친화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p> <p>④ ~ ⑥ (생 략)</p> <p>제13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159조----- ----- ----- -----.</p> <p>제2조(정의) ----- -----.</p> <p>1.----- 「<u>기금</u>」-----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위원장은 <u>행정관리국장</u>-----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3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기금운용관은 동정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p> <p>③·④ (생략)</p> <p>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②----- <u>체육관광과장</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p>「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시민친화국장, 생활복지친화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경제친화국장, 보건소장</p> <p>2.·3.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자매도시교류 담당 국장</u>-----.</p> <p>③----- -----.</p> <p>1. 각 국·소장</p> <p>2.·3.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p> <p>1. 「지방자치법」 제102조-----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p> <p>제3조(국의 설치) ① (생략)</p> <p>제7조(복지환경국) ① (생략)</p> <p>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4. (생략)</p> <p>15.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청소대행업체 관리, <u>환경미화원</u> 관리에 관한 사항</p> <p>16. ~ 18.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p> <p>제3조(국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7조(복지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 <u>환경공무원</u> -----</p> <p>16. ~ 18.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2조 (용어의 정의) (생략)</p> <p>제10조 (구성) ①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2조 (용어의 정의) ① ~ ⑥ (현행 제2조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제10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행정지원국장</u>이 된다.</p> <p>③ (생 략)</p>	<p>②----- <u>행정관리국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u>행정지원국장</u>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p> <p>제25조(간사) ① (생 략)</p> <p>②간사는 <u>기획조정과장</u>이 된다.</p> <p>③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직무발명업무 담당부서의 장</u>-----.</p> <p>제2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직무발명업무 담당부서의 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p> <p>제8조(구성 등) ① (생 략)</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u>행정지원국장</u>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p> <p>제8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안업무총괄국장</u>-----.</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실무회의는 <u>기획조정과장</u>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제10조(회의) ① ~ ③ (생 략)</p> <p>④실무회의는 <u>기획조정과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p> <p>②위원회의 간사는 <u>기획조정과장</u>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③-----</p> <p>-----.</p> <p>-----.</p> <p>-----.</p> <p>----- <u>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u>-----.</p> <p>제10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u>-----.</p> <p>제12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u>-----.</p>
<p>「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u>시민친화·생활복지친화·생활도시친화·경제친화·행정지원국장 및 보건소장</u></p> <p>2.·3.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1. <u>각 국·소장</u></p> <p>2.·3.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규정비전 제시 및 정책자문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9조(간사) ① (생략)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체회의의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는 소관 국 주무과장 또는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② ----- 미래중구포럼 운영 총괄 부서의 장-----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②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1.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경제친화국장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경제과장이 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기획예산과장, <u>교육체육과장</u>, 환경과장, 세무1과장, 민원여권과장</p> <p>2.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도심산업과장</u>-----.</p> <p>③----- -----.</p> <p>1. ----- <u>청소행정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p> <p>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u>경제진흥국장</u>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2. (생략)</p> <p>④ ~ ⑧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p> <p>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기획재정국장</u>-----</p> <p>1.·2.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p>
<p>「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생략)</p> <p>제14조(우선구매 촉진) ① (생략)</p> <p>제21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u>경제진흥국장</u>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사회적경제과장</u>이 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0조(경영지원 등)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4조(우선구매 촉진)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2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기획재정국장</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일자리경제과장</u>-----.</p>
<p>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p> <p>제2조(용어의 정의) -----</p>

현 행	개 정 안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p>2. ~ 5. (생 략)</p> <p>제21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생 략)</p> <p>제22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 략)</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④ 청년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중구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p> <p>2. (생 략)</p>	<p>1. ----- ----- 19세 이상 39세 이하-----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21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22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④ ----- -----.</p> <p>1. ----- 19세 이상 39세 이하----- -----</p> <p>2.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p> <p>제8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p> <p>제8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p> <p>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1. 경제진흥국장, 생활도시진흥국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p> <p>2.·3. (생 략)</p> <p>⑤·⑥ (생 략)</p> <p>제15조(관련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p> <p>2.·3.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련규정의 준용 등) -----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p>「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p> <p>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p> <p>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구청장은 경제친화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분업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구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친화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④ (생략)</p>	<p>②----- 기획재정국장-----</p> <p>제3조(구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기획재정국장-----</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p> <p>제2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p> <p>제25조(위탁관리) 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를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p>
<p>「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p> <p>제38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p> <p>2. (생략)</p> <p>④·⑤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p> <p>제38조(기금의 설치) ① ----- 「지방자치법」 제159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가족정책과장</p> <p>2.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수강료등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의 5할을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 6.·7. (생 략) ② ~ ④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수강료등 감면)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65세 ----- --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만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의 대상) ----- 18세 ----- ----- ----- -----.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급금의 처리) 제6조에 따른 환급금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환급금의 처리)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법 제34조제5항----- -----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청장·생활복지진흥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복지진흥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복지환경국장-----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복지환경국장----- -----.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 략)</p> <p>8.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p> <p>9.·10. (생 략)</p>	<p>제3조(지원내용)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65세 ----- -----</p> <p>9.·10.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 -----.</p> <p>1. ----- ----- ----- 65세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65세 ----- -----.</p>
<p>「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p> <p>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①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p> <p>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3. (생 략)</p> <p>③·④ (생 략)</p>	<p>② ----- ----- 65세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p> <p>제3조(지원내용) ① (생 략)</p> <p>② 삭 제</p> <p>③ 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인 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칙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p> <p>제3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③ ----- ----- 80세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준용)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환경미화원</u> 임금에 관한 사항</p> <p>5. ~ 7. (생 략)</p> <p>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u>환경미화원</u>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골목길 등에 대한 공동청소를 위해 동장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48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생 략)</p> <p>2. <u>시민친화국장</u></p> <p>3.·4. (생 략)</p> <p>제5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청소행정과장</u>이 된다.</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환경공무원</u> -----</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 ----- ----- <u>환경공무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청소행정업무 총괄국장</u></p> <p>3.·4. (현행과 같음)</p> <p>제52조(간사 및 수당) ① ----- ----- <u>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u>-----.</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u>환경미화원</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u>환경미화원</u>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u>환경미화원</u>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③ (생 략)</p> <p>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중구 소속 <u>환경미화원</u>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p> <p>제7조(대여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p> <p>1. (생 략)</p> <p>2. 부부가 <u>환경미화원</u>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p> <p>3. ~ 5.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u>환경공무원</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u>환경공무원</u> 자녀----- <u>환경공무원</u> 자녀학자금대여기금----- -----.</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 <u>환경공무원</u> 자녀학자금 ----- <u>환경공무원</u>자녀학자금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대여대상) ----- <u>환경공무원</u>----- -----.</p> <p>제7조(대여대상 제한)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환경공무원</u>----- -----</p> <p>3.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 략) ② <u>환경미화원 1명</u> 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공무원</u> ----- ----- -----.
제12조(채권보존)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u>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u> 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같은 기관 소속 <u>환경미화원 1명</u>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2조(채권보존) ①----- ----- <u>환경공무원 퇴직금</u> ----- ----- ----- <u>환경공무원 1명</u> ----- ----- -----.
제1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u>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u>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u>1. 기획조정과장</u> 2.·3. (생 략) ⑤·⑥ (생 략)	제1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u>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u> ----- ----- -----.
제1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3의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②기금운용관은 <u>청소행정과</u>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③·④ (생 략)	제14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신 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1장 총칙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생략)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국민의 참여) ① ~ ④ (생략)	제17조(국민의 참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제21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민회의원 및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구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 <u>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재정지원) ① (생략)	제27조(재정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조례」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 ----- ----- -----
1.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1. ----- <u>복지환경국장</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생활도시친화국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u>공공디자인 업무 총괄국장</u>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색채, 환경, 서비스, 사회문제해결, 범죄예방, 유니버설, 도시계획, 경관, 건축, 조경, 조명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 -----
1. 생활도시친화국장 및 건축과장	1.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7조(적용범위) ① (생략)	제7조(적용범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범죄예방진단팀CPO)를 참석시켜야한다.	② ----- ----- <u>「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u>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p>「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p>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的人数은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생활도시친화국장</p> <p>2.·3. (생략)</p> <p>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으로 하며,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p> <p>1. 도시관리국장</p> <p>2.·3. (현행과 같음)</p> <p>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시관리국장----- -----.</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현 행	개 정 안
<p>1. 경제친화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재무과장, 도시재생과장</p> <p>2. ~ 9. (생략)</p>	<p>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재무과장, 도시정비과장</p> <p>2. ~ 9.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된다.</p> <p>② ~ ④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2조(적용범위) ----- ----- 「주택법」 제16조 ----- ----- -----.</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 ----- ----- ----- ----- ----- ----- ----- ----- -----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국장-----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시설과장</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p>

현 행	개 정 안
2.·3. (생 략) ④·⑤ (생 략)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2.·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규정)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이의신청) ----- -----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법인·단체 또는그 산하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③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도심재생과장, 가로환경과장, 도로시설과장, 치수과장 2.·3. (생 략) ⑤ (생 략) 제14조(관계규정의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과장----- ----- ④----- -----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심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2.·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규정의준용등) -----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 ⑤ (생략)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①----- ----- ----- 제91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생략)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 법 제94조-----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안전담당관 2. (생략) ② (생략)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담당관 해당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회계공무원) ①----- -----. 1. ----- 생활안전과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재난관리기금 담당주사-----.

현 행	개 정 안
⑥ (생략)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제18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제6조의2제1항제5호----- -----. 제18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제18조의 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p>	<p>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p>
<p>「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p> <p>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p> <p>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안전건설교통국장-----</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p> <p>-----</p> <p>-----</p> <p>-----</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p>

현 행	개 정 안
<p>1. 위생과장, 재무과장</p> <p>2. ~ 4. (생략)</p> <p>⑤·⑥ (생략)</p> <p>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1. 보건위생과장-----</p> <p>2. ~ 4.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p> <p>-----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p>-----.</p>
<p>「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p> <p>-----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p> <p>-----</p> <p>-----.</p>
<p>「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2조(준용) -----</p> <p>-----</p> <p>-----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p>-----.</p>
<p>「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p> <p>1. (생 략)</p> <p>2. 접종일 현재 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p> <p>가.·나. (생 략)</p> <p>다. <u>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u>를 포함한다)</p> <p>라. ~ 자. (생 략)</p>	<p>제2조(지원대상)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환경공무원</u>----- -----</p> <p>라. ~ 자.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p>1. ~ 3.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p> <p>제2조(기능) -----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u>추진을 위하여</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u>건강관리과장</u>, 의약과장</p> <p>2. ~ 4. (생 략)</p> <p>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 위원 중 중구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②·③ (생 략)</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u>지명한위원</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시민건강과장</u>이 된다.</p> <p>② (생 략)</p>	<p>4. ----- ----- <u>추진을 위하여</u> -----</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u>보건지소과장</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u>임기는 그</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지명한 위원</u> ----- -----</p> <p>제7조(간사) ①----- ----- <u>지역보건과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0조(준용) -----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p>「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p> <p>제5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5명은 서울특별시 <u>구의회</u>에서 추천한다.</p> <p>1. ~ 5. (생 략)</p> <p>③·④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중구의회</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p> <p>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u>중구청</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자료 제출) ①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p> <p>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 <u>중구청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자료 제출) (현행 제1항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미 수정 사례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등 정비
-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타자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7호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물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동물복지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동물의 구조
3. 포획·구조된 동물의 공고·보호·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한 및 처분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두(頭)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및 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구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입양 또는 기증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 2. 동물등록비용
-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을「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홍보할 수 있다.

제17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19조(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체는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단체에 해당되어야 함)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체는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단체에 해당되어야 함)

④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반려동물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일시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동물친화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시행중인 조례의 명칭변경) 기 시행중인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명칭을 본 조례로 변경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 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감독 등
 -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유실·유기 동물의 반환 등
 - 피해학대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지원
 - 길고양이의 관리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8호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봉제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센터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지원) ①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봉제관련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3.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

4. 패션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안 제출) ①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승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패션봉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패션봉제업무 담당 부서장
3. 구에 사업장을 둔 봉제업체의 대표
4. 구의 봉제 단체 또는 조합의 대표
5.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패션봉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패션봉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중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중구 패션봉제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입법하고, 수탁자의 선정과 의무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 제4조)
-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제5조~제7조)
- 수탁자 선정, 의무 및 지도 감독 등(제8조~제12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14조~제18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9호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취업 관련 교육훈련, 고용안정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구직 상담 및 민간기업 취업 연계 등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5.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7.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8.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 자격 취득 교육 등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 호텔 룸메이드, 관광안내해설사,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 지역 인력 양성 사업
2. 국가기술·전문자격, 민간자격 취득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교육
4.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지역 주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또는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6조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을 양성하여 구 관내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등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구 또는 위탁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등의 교육내용, 임무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8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일자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구 일자리 창출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 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 나.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일자리 지원 시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2. 취업 지원 교육
- 3.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시설의 장은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상담원은 직업소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타 일자리 지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비
- 2. 제8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3.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4. 제20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비
- 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홍보물품 등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공동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과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우수기업 등 인증)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기관·단체를 수시로 선정하여 우수 기업 등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인증패 교부
- 2. 기업 홍보
- 3. 고용환경개선 지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기관 또는 단체
- 2.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서울특별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우리 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제1조~제4조)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보조금 사업 지원(제5조~제8조)
- 보행안전도우미 양성하여 관내 공사장에 연계(제7조)
- 중구 일자리위원회 설치(제9조~제16조)
-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및 일자리 사업 행·재정 지원(제17조~제18조)
- 지역일자리 협력 체계 구축(제19조)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인증 및 포상(제20조~제2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0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때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장소 등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공자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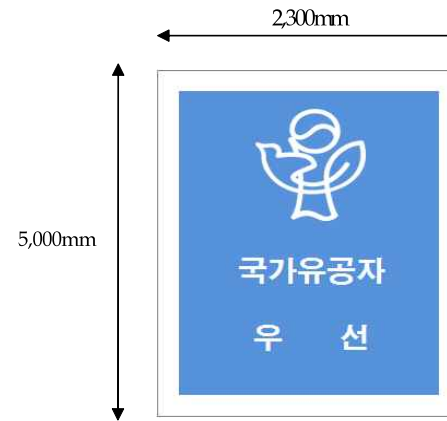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나. 색 상 : 하늘색(바닥면), 흰색(글자, 문양)

2. 도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제3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제4조, 제5조)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제6조)
- 시설물 사용료 감면(제7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포상금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	신고대상자 :		
	신고대상자 연락처 :		
	신고대상자 상세주소 :		
	위기상황 : ※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액	건당 00만원 ※ 동일 신고인이 연간 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굴 대응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
 - 발굴 대상자 정의 및 지원,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 민관협력,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
 - 협력강화 및 활동촉진을 위한 경비(물품) 및 포상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이란 거동 불편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① 구청장은 거동 불편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목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대기 중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3. 질병 및 수술 등으로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③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되 이용·제공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u> ”이란 <u>거동 불편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u> 제16조의3(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① <u>구청장은 거동 불편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목욕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u>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1.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 제15조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대기 중인 사람 2. 「 <u>장애인복지법</u> 」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u>거동이 불편한 사람</u> 3. <u>질병 및 수술 등으로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u> ③ <u>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되 이용·제공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u> ④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매년 고령화 가속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안전한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에 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제6호 신설).
-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의3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3호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와 교통비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

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 등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에는 월 2만원을 지원하되, 그 다음연도에는 재정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최대 월 1만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지원 대상(제4조) :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어르신
- 지원체계 구축(제5조) : 시스템 구축, 업무 제휴·협약·위탁 등
- 이용 방법(제6조) : 교통비 지급을 위한 카드발급 및 신청
- 교통비 지원(제7조) : 사용내역 검토 후 지원,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지급사무 등 위탁가능, 2023년에는 월 2만원을 지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대비 최대 월 1만원 인상 가능하도록 규정
- 지원 중단 및 환수(제8조), 사후관리(제9조)
- 준용 등(제10조~제11조)
-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4호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 중구 노인인구”를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인구”로, “서울 중구 청구로”를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란”을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대상자)”를 “(이용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을 “서울특별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 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 “사용”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는 사용료”를 “이용자는 이용료”로, “사용할”을 “이용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시간”을 각각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별표의 이용료”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사용하는”을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용자가 본인”을 “이용자가 본인”으로,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용자가 원상복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으로”로, “3년 단위”를 “5년 단위”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시설운영”을 “시설 운영”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관리·사용함”을 “관리·이용함”으로 한다.

제17조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이용료(제5조 관련)

구 분	요 금	비 고
목욕탕	1,000원 / 회	
헬스장	1,000원 / 회 15,000원 / 월	

※ 거동불편자의 보조자도 위 이용료와 동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등을 위해 서울 중구 청구로 8길 22에 조성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인구 ----- -----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에 설치된 목욕탕 및 헬스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거동불편자”란 스스로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시설”이란 -----.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 4. ----- 사람을 -----.
제3조(사용대상자)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65세 이상인 자(단, 거동불편자는 보조자를 포함) 2. 그 밖에 서울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자) ① ----- 이용자----- 1. 서울특별시 ----- 사 랫----- 2.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이용----- ② ----- 이용자는 이용료----- 이용할 -----.
제4조(사용시간)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이용시간) ① ----- 이용시간-----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u>사용시간</u> 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② ----- ----- <u>이</u> <u>용시간</u> ----- ----- -----.
제5조(사용료) 구청장은 시설의 <u>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u> 를 징수한다.	제5조(이용료) ----- <u>이용자로부터</u> <u>별표의 이용료</u> -----.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용허가</u> 없이 시설물을 <u>사용하는</u> 사람	4. <u>이용허가</u> ----- <u>이용하는</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손해배상) 시설의 <u>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u>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u>사용자가 원상복구</u> 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 <u>이용자가 본인</u> ----- ----- ----- <u>이용자가 원상복구</u> ----- -----.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u>어르신 헬스케어센터</u> 를 <u>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u> 에 위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 ----- <u>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u> <u>위탁하여 운영하거나</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u>3년</u> 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u>3년 단위</u>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u>5년</u> 으로 ----- ----- <u>5년 단위</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략)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u>시설</u> ✓ <u>운영</u> ----- ----- -----.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u>사용자</u> 는 그 시설을 <u>관리·사용</u> 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변상책임) ----- <u>이용자</u> ----- ----- <u>관리·이용함</u> ----- ----- -----.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u>사용자</u> 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u>상해보험</u> 및 <u>화재보험</u>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 ----- ----- ----- <u>이용자</u> ----- -----.																		
[별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사용료(제7조 관련)	[별표]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이용료(제5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요 금</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목욕탕</td> <td>1,000원 / 회</td> <td></td> </tr> <tr> <td>헬스장</td> <td>1,000원 / 회</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요 금	비 고	목욕탕	1,000원 / 회		헬스장	1,000원 / 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요 금</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목욕탕</td> <td>1,000원 / 회</td> <td></td> </tr> <tr> <td>헬스장</td> <td>1,000원 / 회 15,000원 / 월</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요 금	비 고	목욕탕	1,000원 / 회		헬스장	1,000원 / 회 15,000원 / 월	
구 분	요 금	비 고																	
목욕탕	1,000원 / 회																		
헬스장	1,000원 / 회																		
구 분	요 금	비 고																	
목욕탕	1,000원 / 회																		
헬스장	1,000원 / 회 15,000원 / 월																		
※ 거동불편자의 보조자도 위 사용료와 동일	※ 거동불편자의 보조자도 위 이용료와 동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과 상이하게 민간위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용료가 1일 단위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음.
- 이에 따라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과 일치시키고, 어르신들이 헬스장 이용 시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 이용료를 추가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제8조제4항).
- 헬스장 이용 시 일(日) 이용료 외에 월(月) 이용료를 추가함(별표)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5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할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제5조~제7조)
- 위탁 및 지원(제8조)
- 홍보(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6호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예방·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2022년 9월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피해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현황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7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7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중구민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중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제4조)
- 아동보호구역 관련 사업 추진, 실태조사, 시설물 설치 등 (제5조 ~ 제8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제9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8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를 “대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대학생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u>대학생</u> 으로 <u>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u> 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 ----- <u>대학생</u>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중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매년 고시됨에 따라 개정
 - “대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이하”를 “대학생”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19호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배출구 등에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
2. 봉제공장, 인쇄공장
3. 도로터널, 지하차도
4. 일반음식점

제16조(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의식 확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배출구 등에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 2. 봉제공장, 인쇄공장 3. 도로터널, 지하철도 4. 일반음식점
<신 설>	제16조(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의식 확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중구의 지역적 입지 및 봉제공장, 지하철 환기구 등 미세먼지 다량 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임
- 이에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권장토록 하여 관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제15조)
-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제16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
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유용미생
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절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EM제조기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4조)
- 생산·공급 및 공급대상(제5조 ~ 제7조)
- 점검·조사 및 공급제한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제8조 ~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1호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구구민”을 “중구 구민”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4. “방법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경우「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내 경찰서 등의 범죄예방 관련 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법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법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법시설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 할”을 “설치·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의2에 따른 방법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전단 중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내 경찰서 등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원 되도록 노력 할”을 “지원되도록 노력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침입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방법시설물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법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 신설함(제2조제4호~제5호).
-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경찰서의 범죄예방 관련 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2항).
-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법시설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8조제3호 및 제8조의2)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으로서 방법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제9조제1항제4호).
- 그 밖에 띄어쓰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2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 및”으로 한다.

제13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계시대”를 “지정계시대”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제22조제5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 제1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² 초과 0.5m² 이하는 0.5m²로 0.5m² 초과 1.0m² 미만은 1.0m²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마.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사.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아.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자.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차.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 3	1만원에 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6)
 -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1~3차)에 따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 신설(제13조제9항)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불복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기타 이탈자 수정(제14조, 제19조제1항, 제24조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3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교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비 고> 1 ~ 15. (생략)</p> <p>1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u>두 자녀</u>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비 고> 1 ~ 15. (현행과 같음)</p> <p>1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u>대하여</u>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정 (별표1, 16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할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4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풍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의 경우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영업자는 난간 주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는 음향장치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3.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파라솔, 테이블, 어닝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하여야 한다.
6.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데우기) 등 조리가 불가하며, 옥내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파라솔 등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옥내영업장으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5. 일반·휴게음식점 중 건물 내·외 영업장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옥외영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옥외영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목적, 정의, 적용대상(제1조 ~ 제3조)
-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4조)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5조)
- 영업제한 및 행정조치(제6조, 제7조)
- 준 용(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5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변동등록을 해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명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중구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섭단체 구성 및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함(제3조)
- 교섭단체의 기능을 명시함(제4조)
-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6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별표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시행(2023.3.2.字)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여비 지급 기준 개정(제6조)
 - 의원이 공무로 인한 국내 출장의 경우, 운임과 숙박비 등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을 삭제
 - 의원이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의 경우, 운임과 숙박비 등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2를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7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별표 1]”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로 변경한다.

별표 1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시행(2023.3.2.字)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표 개정(안 제4조)
 -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을 삭제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7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7일”을 각각 “6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생략) ②부서장은 속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 일로부터 <u>7일</u>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일직 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u>7일</u>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6주</u> ----- -----. ③ ----- ----- ----- <u>6주</u>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공휴일 근무 후 휴무 규정내용을 당직 근무 후 대체휴무 허용기간 조항에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숙직 근무자의 휴무 조항 개정
 - 일·숙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